



#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번호	4-1-47
제정일자	2021. 12. 23.
개정일자	2024.4.15.
책임부서/팀·계	국제교류협력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국제교류협력원장, 대외협력처장, 전체학과 중에서 교수 5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30., 2023.12.7., 2024.3.20., 2024.4.15.>

② 당연직 이외의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2023.3.30., 2023.12.7., 2024.4.1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대학입학 전형관리 기술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대학입학 정보개발과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6. 기타 외국인 대학입학 전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서류심사소위원회
2. 기타 연구분석, 입학홍보, 심사평가 등의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원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개정2023.3.30., 2023.12.7., 2024.4.15.>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2조(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장), 제8조(간사)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